

『구미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이 2016. 1. 25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 및 내용을 개정하고, 공익신고 접수 및 방법 등 처리절차와 보호제도 기반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 도모하고자 함.
-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의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 및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, 공익신고 접수 및 방법 등 처리절차와 보호제도 기반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 제명 변경
 - 당초 : 「구미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」
 - 변경 : 「구미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
- 공익신고 관련 용어 정의(안 제2조)
 - “공익침해행위”란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
 - “공익신고자”란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람
 - “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”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인정된 기업
- 공익신고센터의 설치·운영 근거 마련(안 제4조)

-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내 직접창구를 설치·운영하거나 도 혹은 국민권익위원회운영센터에 연결하고 감사담당관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
- 공익신고자등의 보호(안 제5조)
 - 공익신고자 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
- 공익신고자 접수·처리(안 제7조 ~ 제9조)
 - 공익신고 접수처리절차, 서식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운영 효율성 증대
-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규정 마련
(안 제10조, 제11조)
 -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과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으로 공익신고 활성화
-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
(안 제12조 ~ 제22조)
 - 공익신고 활성화와 공익신고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를 설치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 법령체계에 맞도록 개정하여 공익신고 접수 및 방법 등 처리절차와 보호제도 기반을 마련하여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